

의안번호	2202135
의 퇴 인	김승원의원
회 답 일	2024. 8. 20.
추계번호	24C2276

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미디어바우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원, 2030년 1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억원(연평균 1억원) 이상으로 추계됨
 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
 -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미디어바우처 사업계획 (안 제5조)	100	100	100	100	100	500	1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미디어바우처 사업계획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디어바우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미디어바우처 사업의 기본방향, 미디어바우처 및 마이너스바우처의 내용 및 발급기준 등을 포함한 미디어바우처의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그 주요내용을 공표하여야 함	의무규정

2	안 제6조(미디어바우처 사업의 실시) 및 안 제18조(미디어바우처의 환수 등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게 미디어바우처 및 마이너스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음	재량규정
	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상사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대상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상사업자가 제공받은 미디어바우처 및 마이너스바우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함	의무규정
3	안 제21조(블록체인 기술 및 기반시설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바우처 사업의 운용을 위하여 블록체인 기반시설을 마련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상사업자가 미디어바우처 및 마이너스바우처를 제공받은 현황을 이용권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전자바우처가 효율적으로 통일적으로 사용·관리될 수 있도록 이를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5조(미디어바우처 사업계획)	○	
2	안 제6조(미디어바우처 사업의 실시) 및 안 제18조(미디어바우처의 환수 등)	×	- 추계 곤란
3	안 제21조(블록체인 기술 및 기반시설)	×	- 추계 곤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미디어바우처의 기본계획을 수립(안 제5조)하는데 필요한 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함
 - 기본계획 수립비용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
- 미디어바우처 사업의 실시(안 제6조) 및 미디어바우처의 환수(안 제18조)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따라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시점에서 향후 미디어바우처 지급업무에 따라 증원될 인력의 수와 직급 등에 관한 정보, 미디어바우처의 지급 대상·기준, 미디어바우처의 환수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미디어바우처 사업의 운용을 위하여 블록체인 기반시설을 마련(안 제21조)하도록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가능하나, 블록체인 기반시설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블록체인에 포함될 정보의 내용·범위 등에 관한 정보를 현시점에서 알 수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법률안 심사·의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안 제5조에 따라 매년 미디어바우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예상
 -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미디어바우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매년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함
 - － 유사사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도에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약 1억원을 편성하였음

[표 2]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미디어바우처 사업계획 (안 제5조)	100	100	100	100	100	5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